

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 운영 규정

제정 2017. 7. 14. 개정 2020. 10. 2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5조의8에 따라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
2. 평생학습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
3. 평생교육체제 운영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
4. 세부 사업별 업무 추진 및 분기별 추진 실적 점검
5. 그 밖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사업단에는 단장, 부단장, 행정실을 둔다.

- ②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부단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직원을 둔다.

제4조(임무) ① 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행정실에서는 사업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사업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업추진위원회는 총장, 대학원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미래융합대학장, 총장이 임명하는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간사는 미래융합대학 행정실장이 된다. <개정 2020. 10. 26.>

③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
2.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
3.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
4.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등 사업 총괄 추진
5. 그 밖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사업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및 성과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미래융합대학의 학장, 학과장, 전담교수, 행정실장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장이 된다. <개정 2020.10.26.>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자체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미래융합대학장, 미래융합대학 전담교수, 교무부처장, 학생부처장, 기획부처장, 순천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2명, 외부 위원 3명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장이 되며, 간사는 미래융합대학 팀장이 된다. <개정 2020.10.26.>

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성과지표 달성 여부 점검 등 자체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
2. 우수성과 확산 계획 및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
④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재정 및 회계) ① 사업단의 재정 수입금은 국고지원금과 대학 자체지원금으로 한다.

②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은 순천대학교 대학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운용한다.

③ 사업단 회계는 대학회계 관련 규정,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 관리 운영 매뉴얼을 따른다.

제9조(운영세칙 등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<2017. 7. 14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10. 26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